

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21 호

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

전라북도의회 배경태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

1. 집회일시 : 2017년 2월 14일(화) 11시
2. 장 소 : 전라북도의회 본회의장

2017년 2월 8일

전라북도의회의장 황

